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1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8. 10.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였다. 수화자가 저금리정부지원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원고가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수화자는 원고가 기존에 D조합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도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즉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겁을 주어 원고는 같은 날 오후 수화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D조합 계좌로 3,86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전세보증금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2021. 8. 9. E이라는 사람에게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갚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 명의 D조합, F조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냈다.

피고는 2021. 8. 10. 21:00경 E에게서 D조합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텐데 계좌가 2개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니 F조합통장으로 1,200만 원, 제3자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이체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돈을 이체하였다. E은 피고의 F조합 통장에 이체된 돈 중 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92,000원과 D조합 통장에 남아 있던 1,465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2022. 4. 8.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만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7호증

2.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당시 구체적으로 원고가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행위와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서 기망을 당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직후 발생하였고, 피고가 대여한 체크카드가 2개에 불과하며, 피고가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대출금을 송금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기망 때문이고, 계좌 명의인이 누구인지가 원고가 돈을 입금한 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E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D조합 통장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서 기망을 당하여 피고 계좌로 돈을 입금한 이후에 일어난 일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수정